

#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·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**심사경과보고서**

의안번호	제333호
------	-------

2021년 06월 14일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05. 28. 송파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05. 31.
- 다. 상정일자 : 2021. 06. 14. 제287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유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및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송파구 아동·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아동의 권리 및 참여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·청소년 친화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명시(안 제1조)
- 아동 4대 권리의 구체적 명시(안 제2조)
  - 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참여권
-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10조)
-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조항 신설(안 제11조)
  - 교육대상자 구체적 명시

- 아동실태조사 조항 신설 (안 제12조)
- 아동권리 ombudsman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2조제5호, 제13조)
  - 인원, 역할, 임기, 수당 등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및 제11조
  - 유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제4조, 제6조, 제12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평가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박철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2조에서는 아동·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되는 4대 권리인 “생존권, 보호권, 발달권, 참여권”과 “ombudsman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아동의 참여와 권리 및 ombudsman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조항임.
-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의 권리를 보호 증진함은 물론, 최근 야기되는 아동 학대의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본 조례의 개정이 단순 선언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 보고함.

#### 4. 질의 및 답변

【 질의 : 김득연, 김희숙, 한상욱 위원, 이영재 위원장 】

- 답변 :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

- 본 조례와 관련하여 타구 조례 운영 현황은?
  -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인권단체 의견을 반영 하였음.
- 포괄적 양성 평등 내용을 포함한 것인지, 포괄적 성교육을 포함한 것인가? 초등교재에서의 성교육과 같은 맥락인지?
  - 조례의 내용에는 포괄적 양성평등이나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.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의 성교육과 본 조례의 내용을 연관 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.
- 안 제11조에서의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?
  - 교육 내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며,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, 주로 초등학교 교육 위주가 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12조에서 아동 실태조사의 모니터링 방법은?
  - 아동 실태조사 항목은 매뉴얼의 표준안에 따라 조사하게 됨.
- 안 제13조에서 ombudsman의 인원을 5명 이내로 하였는데, 지원 인원이 적정한지? 활동비는 어떠한 예산으로 지급하며,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?

-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, 제도 도입 권장에 따른 것으로 연 1-2회 정도 의견청취를 통해 활동을 하게 됨. 수당은 회의 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, 기존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통해 지급하게 되므로 수당에 따른 별도의 예산 편성은 필요하지 않음.

## 5. 심사결과 : 「보류」

### ※ 보류에 대한 의견

본 안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의 의견 조율 결과,

- 조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도록 함